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림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림보호국 밑에 설치한 산림생태복원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두는 전문경력관 1명의 직무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산림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 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재해방지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재해방지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을 “임업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본문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을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6명(5급 5명 및)”을 “7명(4급 1명, 5급 5명,”으로 한다.

제22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제3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3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7”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0”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7”을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0”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촬영 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3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7”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0”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7”을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

는 임업사무관 20”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촬영 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일반직 계 31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2”를 신설하며,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2”를 삭제한다.

별표 6의2 중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2”를 신설하며,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2”를 삭제한다.

별표 6의3 중 일반직 계 34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2”를 삭제한다.

별표 6의4 중 일반직 계 35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2”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고위공무원단 3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을 삭제한다.

별표 7의2 중 고위공무원단 3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을 삭제한다.

별표 9의2의 산림보호국 산림생태복원과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9월 30일까지”를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0 중 일반직 계 4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u>부이사관</u> ·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3조(대변인) ----- <u>부이사관</u> ·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 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법무감 사담당관 · 산림디지털담당관 및 산림빅데이터팀장을 두되, 각 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u> <u>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팀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u> <u>관 · 임업사무관</u> 또는 <u>전산사무</u> <u>관</u> 으로 보한다.	② -----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u> <u>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으로, 팀장 은 <u>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u> <u>임업사무관 · 행정사무관</u>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① (생 략)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① (현행 과 같음)
②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국제협 력담당관 · 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수출교역팀을 두며, 각 담 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하고, 팀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u> <u>관</u> 또는 <u>임업사무관</u> 으로 보한	②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u> <u>관</u> 또는 <u>서기관</u> ----- <u>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임업</u> <u>사무관</u> 또는 <u>행정사무관</u> -----

다.

③ ~ ⑤ (생략)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 (생략)

② 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산업과·사유림경영소득과·국유림경영과 및 임업직불제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⑨ (생략)

제8조(산림복지국) ① (생략)

② 산림복지국에 산림복지정책과·산림휴양등산과·산림교육치유과·산지정책과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지원과)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산림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산림보호국) ① ~ ③ (생략) ④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 · 산불방지과 · 산사태방지과 · 산림병해충방제과 · 산림생태복원과 · 도시숲경관과 · 정원팀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두되, 각 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팀장 및 상황실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으로 보한다.	제9조(산림보호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u>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⑤ ~ ⑫ (생략) 제11조(산림교육원) ① 산림교육원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②산림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재해방지교육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은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으로, 재해방지교육과장은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1조(산림교육원) ①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②----- ----- ----- <u>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으로, 재해방지교육과장은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③ · ④ (생략) 제12조(산림항공본부) ①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산림항공본부) ① (현행과

②산림항공본부에 항공지원과
· 산림항공과 · 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항공지원과
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
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기술서기관으
로,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
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① (생략)

②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명
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
로 보한다.

③ (생략)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임
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
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

같음)

②-----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
로, 산림항공과장은 과학기술서
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임업사무관 · 행정사무관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임업사무관 ·
행정사무관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

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제14조(지방산림청) ① 북부·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에 기획운영팀, 산림재해안전과 및 산림경영과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행정사무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산림청) ①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

를 두되, 팀장 및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15조(국유림관리소) ① (생략)

②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수원·양양·영덕·구미·양산·부여·정읍·영암·함양 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국유림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6명(5급 5명 및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 ~ ⑨ (생략)

<신설>

⑩ (생략)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국제산림협력관 및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② -----

----- 7명(4급 1명, 5급 5명,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3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삭제>

<u>라 도시숲경관과장 및 산림항공</u> <u>본부 산림항공과장을 임기제공</u> <u>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u> 제24조(수목원조성사업단) ① 수 목원조성사업단장은 <u>서기관</u> 또 는 <u>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제24조(수목원조성사업단) ① -- ----- <u>과학기술서</u> <u>기관 또는 서기관</u>-----.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 또는 임업연구관	· · 3	· ·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u>	<신 설>	<u>6</u>	+6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신 설>	<u>17</u>	+17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 무관</u>	<신 설>	<u>20</u>	+20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신 설>	<u>1</u>	+1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u>	<u>6</u>	<삭 제>	-6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7</u>	<삭 제>	-17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20</u>	<삭 제>	-20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1</u>	<u><삭 제></u>	-1
·			
·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u>전문경력관 가군(촬영 담당)</u>	<u><신 설></u>	<u>1</u>	+1
<u>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 또는 임업연구관	· · 3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	<신 설>	<u>6</u>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신 설>	<u>17</u>	+1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 무관	<신 설>	<u>20</u>	+20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u>1</u>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u>6</u>	<삭 제>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7</u>	<삭 제>	-17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20</u>	<삭 제>	-20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u>	<삭 제>	-1

•			
•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u>전문경력관 가군(촬영 담당)</u>	<u><신 설></u>	<u>1</u>	+1
<u>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u>	<u>1</u>	<u><삭 제></u>	-1
•	•	•	

[별표 5]

산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일반직 계	· 31	·	
·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u>	· <u><신 설></u>	· <u>1</u>	+1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 <u><신 설></u>	· <u>1</u>	+1
·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 무관</u>	· <u><신 설></u>	· <u>1</u>	+1
·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u>	· <u>1</u>	· <u><삭 제></u>	-1
·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 <u>1</u>	· <u><삭 제></u>	-1
·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 <u>1</u>	· <u><삭 제></u>	-1
·	·	·	
·	·	·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고위공무원단	1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u> <u>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u> <u>또는 항공사무관</u>	<u><신 설></u>	<u>2</u>	+2
<u>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u> <u>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u> <u>항공사무관</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고위공무원단	1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u>			
<u>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u>			
<u>또는 항공사무관</u>	<u><신 설></u>	<u>2</u>	+2
<u>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u>			
<u>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u>			
<u>항공사무관</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6의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일반직 계	· 34	·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u> <u>임업연구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u> <u>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u> <u>또는 임업연구관</u>	<u><신 설></u>	<u>2</u>	+2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임</u> <u>업연구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u> <u>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u> <u>임업연구관</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6의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일반직 계	· 35	·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u>	<u><신 설></u>	<u>2</u>	+2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고위공무원단	3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u>			
<u>기술서기관</u>	<신 설>	<u>1</u>	+1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신 설>	<u>5</u>	+5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u>			
<u>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u>			
<u>무관</u>	<신 설>	<u>3</u>	+3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u>			
<u>서기관</u>	<u>1</u>	<삭 제>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5</u>	<삭 제>	-5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u>			
<u>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3</u>	<삭 제>	-3
·	·	·	
·	·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고위공무원단	3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u>			
<u>기술서기관</u>	<신 설>	<u>1</u>	+1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신 설>	<u>5</u>	+5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u>			
<u>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u>			
<u>무관</u>	<신 설>	<u>3</u>	+3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u>			
<u>서기관</u>	<u>1</u>	<삭 제>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5</u>	<삭 제>	-5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u>			
<u>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3</u>	<삭 제>	-3
·	·	·	
·	·	·	

[별표 10]

산립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일반직 계	· 4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